경주자이르네

# 경주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경주자이르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경주자이르네 홈페이지(http://gj-xirn.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경주자이르네 홈페이지(http://gj-xirn.com)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외 동반자 1인)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 예약 접수일정(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공급계약 체결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 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포함)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인원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 의심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경주자이르네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경주자이르네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533-1002)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7.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0)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br>(2순위) |
| 세대주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gj-xir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2020. 2. 21.부터 개정 ·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br>(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일정 | 11월 22일(월) | 11월 23일(화) | 11월 24일(수) | 11월 30일(화) | 12월 02일(목) ~ 12월 11일(토) | 12월 13일(월) ~ 12월 15일(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br>(10:00 ~ 17:00) | 견본주택<br>(10:00 ~ 17:00) |
| 장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 견본주택 :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375-24<br>- 제출서류는 당사 홈페이지(http://gj-xirn.com)를 참조<br>＊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2021년 11월 01일(월)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청약신청 등 서비스 시작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7.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경주시청 주택과 - 38311호(2021.11.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현곡지구 B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4개동 총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02세대(일반[기관추천] 38세대, 다자녀가구 47세대, 신혼부부 77세대, 생애최초 27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 타입(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 소계 |  |  |
| 민영주택 | 2021000795 | 1 | 084.7930A | 84A | 84.7930 | 25.4539 | 110.2469 | 6.5911 | 47.9920 | 164.8300 | 44.3811 | 219 | 21 | 21 | 43 | 15 | 6 | 106 | 113 | 9 |
|  |  | 2 | 084.9190B | 84B | 84.9190 | 26.1200 | 111.0390 | 6.6008 | 48.0633 | 165.7031 | 44.4471 | 100 | 10 | 10 | 20 | 7 | 3 | 50 | 50 | 4 |
|  |  | 3 | 084.9789C | 84C | 84.9789 | 25.9585 | 110.9374 | 6.6056 | 48.0972 | 165.6402 | 44.4784 | 73 | 7 | 7 | 14 | 5 | 2 | 35 | 38 | 3 |
|  |  | 4 | 106.9424A | 106A | 106.9424 | 31.5233 | 138.4657 | 8.3127 | 60.5283 | 207.3067 | 55.9743 | 60 | – | 6 | – | – | 1 | 7 | 53 | 2 |
|  |  | 5 | 106.9594B | 106B | 106.9594 | 31.9843 | 138.9437 | 8.3141 | 60.5379 | 207.7957 | 55.9831 | 36 | – | 3 | – | – | 1 | 4 | 32 | 2 |
|  |  | 6 | 129.1138A | 129A | 129.1138 | 43.2854 | 172.3992 | 10.0362 | 73.0771 | 255.5125 | 67.5788 | 2 | – | – | – | – | – | – | 2 | – |
|  |  | 7 | 129.8284B | 129B | 129.8284 | 43.3618 | 173.1902 | 10.0918 | 73.4816 | 256.7636 | 67.9528 | 2 | – | – | – | – | – | – | 2 | – |
|  |  | 8 | 141.9878 | 141 | 141.9878 | 48.6167 | 190.6045 | 11.0369 | 80.3637 | 282.0051 | 74.3172 | 2 | – | – | – | – | – | – | 2 | – |
|  | 합 계 |  |  |  |  |  |  |  |  |  |  | 494 | 38 | 47 | 77 | 27 | 13 | 202 | 292 | 20 |

■ 공급금액 및 납부일

(단위 : 세대, 원)

| 타입 | 라인 | 층구분 |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 1차 | 중도금 2차 | 중도금 3차 | 중도금 4차 | 중도금 5차 | 중도금 6차 | 잔금 |
|---|---|---|---|---|---|---|---|---|---|---|---|---|---|---|---|---|
|  |  |  |  |  |  |  |  | 1차 | 2차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  |  |  |  | 토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분양가 | 계약시 | 계약후 30일 이내 | 2022.03.31 | 2022.06.30 | 2022.10.31 | 2023.05.31 | 2023.07.31 | 2023.10.31 | 입주지정일 |
| 84A | 101동 3호<br>102동 3, 5호<br>103동 3, 4호 | 1층 | 5 | 163,800,000 | 200,200,000 | – | 364,000,000 | 10,000,000 | 2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109,200,000 |
|  |  | 2층 | 5 | 167,400,000 | 204,600,000 | – | 372,000,000 | 10,000,000 | 2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111,600,000 |
|  |  | 3-5층 | 15 | 171,450,000 | 209,550,000 | – | 381,000,000 | 10,000,000 | 2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114,300,000 |
|  |  | 6-9층 | 20 | 175,050,000 | 213,950,000 | – | 389,000,000 | 10,000,000 | 2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116,700,000 |
|  |  | 10-15층 | 30 | 178,650,000 | 218,350,000 | – | 397,000,000 | 10,000,000 | 2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119,100,000 |
|  |  | 16-20층 | 25 | 180,450,000 | 220,550,000 | – | 401,000,000 | 10,000,000 | 3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40,100,000 | 120,300,000 |
|  |  | 21층 이상 | 22 | 182,250,000 | 222,750,000 | – | 405,000,000 | 10,000,000 | 30,500,000 | 40,500,000 | 40,500,000 | 40,500,000 | 40,500,000 | 40,500,000 | 40,500,000 | 121,500,000 |
|  | 101동 5호<br>104동 1, 3, 4호 | 1층 | 4 | 160,200,000 | 195,800,000 | – | 356,000,000 | 10,000,000 | 2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35,600,000 | 106,800,000 |
|  |  | 2층 | 4 | 163,800,000 | 200,200,000 | – | 364,000,000 | 10,000,000 | 2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36,400,000 | 109,200,000 |
|  |  | 3-5층 | 12 | 167,400,000 | 204,600,000 | – | 372,000,000 | 10,000,000 | 2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37,200,000 | 111,600,000 |
|  |  | 6-9층 | 16 | 171,450,000 | 209,550,000 | – | 381,000,000 | 10,000,000 | 2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114,300,000 |
|  |  | 10-15층 | 24 | 175,050,000 | 213,950,000 | – | 389,000,000 | 10,000,000 | 2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38,900,000 | 116,700,000 |
|  |  | 16-20층 | 20 | 176,850,000 | 216,150,000 | – | 393,000,000 | 10,000,000 | 2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39,300,000 | 117,900,000 |
|  |  | 21층 이상 | 17 | 178,650,000 | 218,350,000 | – | 397,000,000 | 10,000,000 | 2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39,700,000 | 119,100,000 |
| 84B | 101동 4호<br>104동 2호 | 1층 | 2 | 166,500,000 | 203,500,000 | – | 370,000,000 | 10,000,000 | 2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111,000,000 |
|  |  | 2층 | 2 | 170,100,000 | 207,900,000 | – | 378,000,000 | 10,000,000 | 2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113,400,000 |
|  |  | 3-5층 | 6 | 174,150,000 | 212,850,000 | – | 387,000,000 | 10,000,000 | 2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116,100,000 |
|  |  | 6-9층 | 8 | 177,750,000 | 217,250,000 | – | 395,000,000 | 10,000,000 | 2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118,500,000 |
|  |  | 10-15층 | 12 | 181,800,000 | 222,200,000 | – | 404,000,000 | 10,000,000 | 3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121,200,000 |
|  |  | 16-20층 | 10 | 183,600,000 | 224,400,000 | – | 408,000,000 | 10,000,000 | 3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40,800,000 | 122,400,000 |
|  |  | 21층 이상 | 10 | 185,400,000 | 226,600,000 | – | 412,000,000 | 10,000,000 | 3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123,600,000 |
|  | 102동 4호<br>103동 2호 | 1층 | 2 | 170,100,000 | 207,900,000 | – | 378,000,000 | 10,000,000 | 2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37,800,000 | 113,400,000 |
|  |  | 2층 | 2 | 174,150,000 | 212,850,000 | – | 387,000,000 | 10,000,000 | 2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38,700,000 | 116,100,000 |
|  |  | 3-5층 | 6 | 177,750,000 | 217,250,000 | – | 395,000,000 | 10,000,000 | 2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118,500,000 |
|  |  | 6-9층 | 8 | 181,800,000 | 222,200,000 | – | 404,000,000 | 10,000,000 | 3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40,400,000 | 121,200,000 |
|  |  | 10-15층 | 12 | 185,400,000 | 226,600,000 | – | 412,000,000 | 10,000,000 | 3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41,200,000 | 123,600,000 |
|  |  | 16-20층 | 10 | 187,200,000 | 228,800,000 | – | 416,000,000 | 10,000,000 | 3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124,800,000 |
|  |  | 21층 이상 | 10 | 189,450,000 | 231,550,000 | – | 421,000,000 | 10,000,000 | 3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126,300,000 |
| 84C | 101동 6호<br>102동 6호 | 1층 | 2 | 173,700,000 | 212,300,000 | – | 386,000,000 | 10,000,000 | 2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115,800,000 |
|  |  | 2층 | 2 | 177,300,000 | 216,700,000 | – | 394,000,000 | 10,000,000 | 2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18,200,000 |
|  |  | 3-5층 | 6 | 181,350,000 | 221,650,000 | – | 403,000,000 | 10,000,000 | 3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120,900,000 |
|  |  | 6-9층 | 8 | 184,950,000 | 226,050,000 | – | 411,000,000 | 10,000,000 | 3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23,300,000 |
|  |  | 10-15층 | 12 | 189,000,000 | 231,000,000 | – | 420,000,000 | 10,000,000 | 3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126,000,000 |
|  |  | 16-20층 | 10 | 190,800,000 | 233,200,000 | – | 424,000,000 | 10,000,000 | 3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42,400,000 | 127,200,000 |
|  |  | 21층 이상 | 8 | 193,050,000 | 235,950,000 | – | 429,000,000 | 10,000,000 | 3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42,900,000 | 128,700,000 |
|  | 103동 1호 | 1층 | 1 | 169,650,000 | 207,350,000 | – | 377,000,000 | 10,000,000 | 2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37,700,000 | 113,100,000 |
|  |  | 2층 | 1 | 173,700,000 | 212,300,000 | – | 386,000,000 | 10,000,000 | 2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38,600,000 | 115,800,000 |
|  |  | 3-5층 | 3 | 177,300,000 | 216,700,000 | – | 394,000,000 | 10,000,000 | 2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18,200,000 |
|  |  | 6-9층 | 4 | 181,350,000 | 221,650,000 | – | 403,000,000 | 10,000,000 | 3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120,900,000 |
|  |  | 10-15층 | 6 | 184,950,000 | 226,050,000 | – | 411,000,000 | 10,000,000 | 3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41,100,000 | 123,300,000 |
|  |  | 16-20층 | 5 | 187,200,000 | 228,800,000 | – | 416,000,000 | 10,000,000 | 3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124,800,000 |
|  |  | 21층 이상 | 5 | 189,000,000 | 231,000,000 | – | 420,000,000 | 10,000,000 | 3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42,000,000 | 126,000,000 |
| 106A | 101동 1호<br>(13F~24F),<br>2호<br>102동 2호 | 1층 | 2 | 204,906,000 | 251,082,000 | 25,012,000 | 481,000,000 | 10,000,000 | 3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48,100,000 | 144,300,000 |
|  |  | 2층 | 2 | 209,592,000 | 256,824,000 | 25,584,000 | 492,000,000 | 10,000,000 | 39,200,000 | 49,200,000 | 49,200,000 | 49,200,000 | 49,200,000 | 49,200,000 | 49,200,000 | 147,600,000 |
|  |  | 3-5층 | 6 | 213,852,000 | 262,044,000 | 26,104,000 | 502,000,000 | 10,000,000 | 4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50,200,000 | 150,600,000 |
|  |  | 6-9층 | 8 | 218,538,000 | 267,786,000 | 26,676,000 | 513,000,000 | 10,000,000 | 4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51,300,000 | 153,900,000 |
|  |  | 10-15층 | 15 | 223,224,000 | 273,528,000 | 27,248,000 | 524,000,000 | 10,000,000 | 4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52,400,000 | 157,200,000 |
|  |  | 16-20층 | 15 | 225,780,000 | 276,660,000 | 27,560,000 | 530,000,000 | 10,000,000 | 43,000,000 | 53,000,000 | 53,000,000 | 53,000,000 | 53,000,000 | 53,000,000 | 53,000,000 | 159,000,000 |
|  |  | 21층 이상 | 12 | 227,910,000 | 279,270,000 | 27,820,000 | 535,000,000 | 10,000,000 | 4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53,500,000 | 160,500,000 |
| 106B | 101동 1호<br>(1F~12F)<br>102동 1호 | 1층 | 2 | 207,888,000 | 254,736,000 | 25,376,000 | 488,000,000 | 10,000,000 | 3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48,800,000 | 146,400,000 |
|  |  | 2층 | 2 | 212,574,000 | 260,478,000 | 25,948,000 | 499,000,000 | 10,000,000 | 3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49,900,000 | 149,700,000 |
|  |  | 3-5층 | 6 | 217,260,000 | 266,220,000 | 26,520,000 | 510,000,000 | 10,000,000 | 4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51,000,000 | 153,000,000 |
|  |  | 6-9층 | 8 | 221,520,000 | 271,440,000 | 27,040,000 | 520,000,000 | 10,000,000 | 4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52,000,000 | 156,000,000 |
|  |  | 10-15층 | 9 | 226,206,000 | 277,182,000 | 27,612,000 | 531,000,000 | 10,000,000 | 4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53,100,000 | 159,300,000 |
|  |  | 16-20층 | 5 | 228,762,000 | 280,314,000 | 27,924,000 | 537,000,000 | 10,000,000 | 4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161,100,000 |
|  |  | 21층 이상 | 4 | 230,892,000 | 282,924,000 | 28,184,000 | 542,000,000 | 10,000,000 | 4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62,600,000 |
| 129A | 103동, 104동 | 펜트하우스 | 2 | 321,630,000 | 394,110,000 | 39,260,000 | 755,000,000 | 10,000,000 | 6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75,500,000 | 226,500,000 |
| 129B | 101동, 102동 | 펜트하우스 | 2 | 322,908,000 | 395,676,000 | 39,416,000 | 758,000,000 | 10,000,000 | 6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75,800,000 | 227,400,000 |
| 141 | 101동, 102동 | 펜트하우스 | 2 | 355,284,000 | 435,348,000 | 43,368,000 | 834,000,000 | 10,000,000 | 73,4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83,400,000 | 250,200,000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84.7930A | 084.9190B | 084.9789C | 106.9424A | 106.9594B | 129.1138A | 129.8284B | 141.9878 |
|---|---|---|---|---|---|---|---|---|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106A | 106B | 129A | 129B | 141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으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전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합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 · 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음.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견본주택은 84C, 106B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외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분 |  | 84A | 84B | 84C | 106A | 106B | 129A | 129B | 141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br>(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 국가유공자 | 4 | 2 | 1 | – | – | – | – | – | 7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2 | 1 | 1 | – | – | – | – | – | 4 |
|  | 장애인 | 7 | 3 | 2 | – | – | – | – | – | 12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2 | 1 | – | – | – | – | – | 7 |
|  | 중소기업근로자 | 4 | 2 | 2 | – | – | – | – | – | 8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  | 21 | 10 | 7 | 6 | 3 | – | – | – | 4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20% 범위) |  | 43 | 20 | 14 | – | – | – | – | – | 77 |
| 생애최초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7% 범위) |  | 15 | 7 | 5 | – | – | – | – | – | 2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3% 범위) |  | 6 | 3 | 2 | 1 | 1 | – | – | – | 13 |
| 합계 |  | 106 | 50 | 35 | 7 | 4 | – | – | – | 20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br>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br>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북 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 ·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에서는 예비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 시행)]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평정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기타 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경주자이르네 홈페이지 : http://gj-xirn.com ■ 견본주택 :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375-24**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 2021.11.10. (수) |
|---|---|---|
| 특별공급 |  | 2021.11.22. (월) |
| 일반공급 | 1순위(해당지역, 기타지역) | 2021.11.23. (화) |
|  | 2순위 | 2021.11.24. (수) |
| 당첨자발표 |  | 2021.11.30. (화) |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 2021.12.02. (목) ~ 2021.12.11. (토) 10일간 |
| 계약체결 |  | 2021.12.13. (월) ~ 2021.12.15. (수) 3일간 |

분양문의 **1533-1002**

**총 494세대**(특별공급 202세대 / 일반공급 292세대)
[ 84A, 84B, 84C, 106A, 106B, 129A, 129B, 141 ]

모델하우스
경주자이르네

현 장 :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431-2 일원
모델하우스 :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375-24